

고 발 장

고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준법투쟁위원회
위원장 김 준 회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
상임대표 이 상 선

사단법인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연기군지회
회 장 강 근 무

피 고발인 (1) 정 운 찬
(2) 정 종 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준법투쟁위원회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정리 풍산A 상가 207호
위원장 김 준 회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 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65-13
상임대표 이 상 선

사단법인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연기군지회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정리 59-1풍산A 상가 206호
회장 강 근 무

피 고발인 (1) 정 운 찬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내 총리실

(2) 정 종 환
과천시 중앙동 정부종합청사 내 국토해양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엄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고발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원안을 사수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결집한 모임이고 피고발인 정운찬은 현재 국무총리로 재직 중인 자, 피고발인 정종환은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재직중인자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2. 피고발인들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이를 집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던 것인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발인 정운찬은 국무총리에 지명되면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를 주장하던니 국고를 들여서 위원회를 만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를 전제로 의논을 하게하고 급기야는 행정부처의 이전을 없던 것으로 하고 그 지역에 삼성등 대기업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피고발인 정종환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정운찬의 취임 이후에는 이를 전혀 추진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2005. 3. 17.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로써 이는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한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22조 5천억 원 중 2009.10월말 현재 24%인 5조5,012억 원이 집행된 사업임에도 이제 와서 행정비효율이라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동원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법률규정을 정면으로 배척하여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변질된 수정안을 강행하는 만행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4. 법률이 제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이상, 행정부는 그 법률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작태가 계속되면 공무원 전체가 법질서를 경시하고 능멸하게 될 것입니다.

5. 결국 피고발인들은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 21

위 고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준법투쟁위원회
위원장 김 준 회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
상임대표 이 상 선

사단법인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연기군지회
회 장 강 근 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